■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30.> <u>행정처분 기준(제16</u>조 관련)

I. 일반기준

-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 간을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 만 할 것
 -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할 것
 -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 분만 할 것
 -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 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할 것
- 3. 같은 날 제조·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부당한 광고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적발일부터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까지를 말한다)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 제조정지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6. 제5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 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안 된다.

-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 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 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본다.
-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해야 한다.
 - 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 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 나.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 10.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식용란 수집·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영업자와함께 처분해야 한다.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자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수집·처리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수집·처리된 식용란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 매업자
- 11.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2.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 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및 용기·포장류제조업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 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가.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 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나.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다.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해당 식품등에 대해 식품이력추 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 우
 -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마.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갖춰 두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감할 수 있다.
 - 사. 그 밖에 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4.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저목에 따라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제공하고 증명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이 표 Ⅱ 제4호가목1)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5.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16.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제4호·제7호마목·제8호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وا ما ال	근거	ठॅ	생정처분 기취	<u>주</u>
위반사항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 터 제17조까 지			
1)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			
가)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 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 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나)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 개 월 과 해당 제품 폐기
단서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 공업만 해당한다)를 위반하여 표시 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 시하지 않는 경우		71/6 6 6	7일	15일
다) 법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보관방 법과 같은 호 라목·바목·사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표시기 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판매한 경우		정지 15일 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 월과 해당 제품 폐기	정지 2개 월과 해당
2)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 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가) 주표시면에 제품명 및 내용량을		품목 제조	품목 제조	품목 제조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나) 주표시면에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 은 경우
- 다) 주표시면에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 은 경우
- 3)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가) 특정 원재료 및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 시하지 않은 경우
- 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 에 사용한 경우
- 4)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는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등만해당한다)
- 5) 원재료명·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가) 사용한 원재료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나) 사용한 원재료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을 별 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하지 않 은 경우

정지	1개	정지	2개	정지	3개
월		월		월	
품목	제조	품목	제조	품목	제조
정지	15일	정지	1개	정지	2개
		월		월	
시정기	명령	품목	제	품목	제
		조정	지 15	조정	지 1
		일		개월	
품목	제조	품목	제조	품목	제조
정지	15일	정지	1개	정지	2개
		월		월	
픗모	제조	포모	제조	푼모	제조
정지	·	정지			2개
0 1	10 E	월	1 /11	원 -	27 11
품목	제조	품목	제조		제조
μ					1,
정지	15일	정지	1개월		2개월
정지 과			1개월 해당	정지	
과	해당	과	해당	정지 과	해당
과		과		정지 과	해당
과	해당	과	해당	정지 과	해당
과	해당	과	해당	정지 과	해당
과	해당	과	해당	정지 과	해당
과 제품	해당	과 제품	해당	정지 과 제품	해당 폐기
과 제품 품목	해당폐기	과 제품 품목	해당폐기	정지 과 제품 품목	해당 폐기 제조
과 제품 품목	해당 폐기 제조	과 제품 품목	해당 폐기 제조	정지 과 제품 품목	해당 폐기 제조
과 제품 품목	해당 폐기 제조 15일	과 제품 품 정 월	해당 폐기 제조 1개	정지 과 제품 품 정 월	해당 폐기 제조 2개
과 제품 품목 정지	해당 폐기 제조 15일	과 제품 품 정 월 품 목	해당 폐기 제조	정지 과 제품 품 정 월 품 목	해당 폐기 제조 2개 제조
과 제품 품목 정지	해당 폐기 제조 15일	과 제품 품 정 월 품 목	해당 폐기 제조 1개 제조	정지 과 제품 품 정 월 품 목	해당 폐기 제조 2개 제조
과 제품 품목 정지 시정 ¹	해당 폐기 제조 15일	과 제품 품 정 월 품 정	해당 폐기 제조 1개 제조	정지 과 제품 품 정 월 품 정 월	해당 폐기 제조 2개 제조 1개
과 제품 품목 정지 시정 ¹	해당 폐기 제조 15일 명령 제조	과 제품 품 정 월 품 정 품	해당 폐기 제조 1개 제조 15일	정 과 제 품 정 월 품 정 월 품 지	해당 폐기 제조 2개 제조 1개
과 제품 품 정 시 정 목 지 목 지	해당 폐기 제조 15일 명령 제조 15일	과 제품 품 정 월 품 정 목 지 목 지 목 지 목 지 목	해당 폐기 제조 1개 제조 15일 제조	정 과 제 품 정 월 품 정 월 품 정	해당 폐기 제조 2개 제조 1개 제조 2개
과 제품 품 정 시 등 정 과	해당 폐기 제조 15일 평형 제 15일 당	과 제 품 정 월 품 정 품 정 월	해당 폐기 제조 1개 제조 15일 제조 1개	정 과 제 품 정 월 품 정 월 품 정 원 품 지 의 관 지 의 과	해당 폐기 제조 2개 제조 1개 제조 2개 해당

- 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그 용도를 함께 표시하지 않은 경우
- 6)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할 때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소 비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표 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 7) 내용량을 표시할 때 부족량이 허용 오차를 위반한 경우[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 가) 표시 내용량이 20퍼센트 이상 부 족한 것
- 나) 표시 내용량이 10퍼센트 이상 20 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다) 표시 내용량이 10퍼센트 미만 부 족한 것
-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식품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 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저장·운반 또는 진열 등 영업에 사 용한 경우
- 가) 식품에 납·얼음·한천·물 등 이 물을 혼입시킨 경우
- 나)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도록 생성시킨 경우
- 9) 조사처리식품·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가) 조사처리된 식품・축산물을 표시

시정명령		품목 제조 정지 15일
1 개 월 과	영 업 정 지 2 개 월 과 해당 제품 폐기	3 개 월 과
정지 2개 월 품목 제조	품목 정지 월 품목 정지 원 품목 정지 15일	조정지 3 개월 품목 제조 정지 3개 월
품목 제조	품목 제조	품목 제조

하지 않은 경우			정지 1	5일	정지 월	1개	정지 월	2개
나) 조사처리식품·축산물을 표시할 때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시정명	령 			품목 정지 월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1)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	-	영업 [:] 5일	정지	영업 ² 10일	정지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 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 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		영업 ² 5일	정지	영업: 10일	정지
다.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시정명	령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부 제17조까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 는 광고			영업 주 2 개 월 해당 7 (표 시 제품만 당 한 1 폐기	! 과 제품 된 해 다)	· 등 소 영업: 쇄와 제품 된 저	록 취 또는 소 폐 해당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경 15일(7 기능스 의 7 영업정 1 개월	건 강 니 품 경 우 덩 지	영업 1개 ⁴ 강기 품의 영업	월 (건 능 식 경우 정지	2개 ⁴ 강기 품의 영업	월 (건 능 식 경우 허 가

3)	건강기	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가기능
	식품으로	로 인식형	할 우리	i가 :	있는	표시
	또는 광	고				

-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 가)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품목제 조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 나)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의 표시기 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1)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
- (2)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 다)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한다) 영업정지 15일	한다) 영업정지 1개월	다) 영업정지 2개월
7일과 해	영업정지 15일과 해 당 제품 폐기	1 개 월 과
1 개 월 과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개 월 과
영업정지 7일 영업허가 ·등록 취 소 또는 영 업소 폐쇄 와 해당 제 품 폐기	영 업 정 지 15일	영 업 정 지 1개월

- 라)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 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 마) 제품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과 다 른 수상(受賞) 또는 상장의 표시・ 광고를 한 경우
- 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것 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 사) 다른 식품·축산물의 유형과 오인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아)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 분명을 표시·광고한 경우
- 자) 이온수·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한 경우
- 차) 사용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 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첨가물 무"등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 카)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 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효과를 표시 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 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

품목	제조	품목	제조	품목	제조
정지	1개	정지	2개	정지	3개
월		월		월	
영업건	정지	영업기	정지	영업기	정지
7일		15일		1개월	-
품목	제조	품목	제조	품목	제조
정지	1개	정지	2개	정지	3개
월		월		월	
품목	제조	품목	제조	품목	제조
년 · 정지		정지			
0 1	10 C	월	- "	월	- "
ΣП	-1) J		-1) ¬		-1) J
	제조		제조		
정지 월	1/#	생시 월	2개	정지 월	3/f
_	z] -J]		zl]		z] -z]
영업건 15일	8 ^1	영업 ^{>} 1개월		영업 ² 2개월	
10 已		1/1 包		스/마 달	
서 시 =	v))	서 A -	z] →]	서 시 -	7] →]
영업건 15일		영업 ^{>} 1개월		영업 ² 2개월	
19 章		1/17 恒		스/미 ⁻ 델	-
6 1 61 =	n))	جا دا د	z] →]	٠١ م ١٠	-11
영업건 7일	싱 <u>시</u>	영업 ⁷ 15일	싱 시	영업 ² 1개월	
/ 근		10 근		I / II 包	
영업건	정지	영업기	정지	영업기	정지
				l	

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 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 농장으로 인증 받지 않고 해당 명 칭을 사용한 경우 파)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축 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 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개월 영업정지 7일	2개월 영업정지 15일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하) 기능성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기 능성표시식품에 영 별표 1 제3호나 목에 따른 표시·광고를 한 경우		품목 제조 정지 15일 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 정지 1개 월과 해당 제품 폐기	정지 2개
거) 그 밖에 가)부터 하)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품목 제조 정지 1개 월
5)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 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품목 제조 정지 15일	품목 제조 정지 1개 월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 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 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시정명령		
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 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 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1)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등록 취 소 또는

2)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소 폐 쇄 영업정지 3개월
자.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및 제16조	- " <u>-</u>		5 ,, 2
1) 회수하지 않고도 회수한 것으로 속 인 경우		영업허가 ·등록 취 소 또는 영업소 폐 쇄와 해당 제품 폐기		
2) 그 밖에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 업 정 지 2개월	영 업 정 지 3개월
차.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허가 · 등 록 취소 또 는 영업 소 폐쇄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 항은 제외한다)		시정명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품목 제조 정지 1개 월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의 도축업·집유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위 반 행 위		л н и		ಕೃ	성정처.	분 기	준	
위 반 % 위 	ピノ	거 법조문	1차 위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닭, 오리	법	제14조부						
등 가금류의 식육 중 포장을 하는 경우	터	제16조까						
만 해당한다)	지							
1) 표시 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합격			영 업	정 지	영 업	정 지	영 업	정 지
표시,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1개월	과 해	2 개	월 과	3 개	월 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보존방법 및 내용			당 제	품 폐	해당	제품	해당	제품

량)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7]		폐기		 폐기		
2)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보존방		영 업	저 기			여어	저	ر ار
법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		° ㅂ 15일과		o B 1 개				
우		 당 제품						
'		0	J -11	페기	. 11 12	-'' 0 폐기	- 11	Ц
3)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또는		영업정	지 7		정 지		정	지
보존방법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일과	해당	15일 5	가 해	1 개	월	과
경우		제품 피	테기	당	제품	해당	제	품
		, , ,	>	폐기		폐기	,	
4) 내용량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	령	영업				
				7일과				
				당			제	苦
5) 생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중 1개 이상		 영업정	지 7	폐기 영 업		폐기 영 업	정.	지
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일 의 일 과		15일 피				
				- 당				
				폐기		폐기		
6) 삭제 <2020. 9. 9.>								
7) 삭제 <2020. 9. 9.>								
8) 식육 포장지에 합격표시를 표시하지 않		시정명	령	영 업	정 지	영 업	정	지
은 경우				10일		20일		
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닭, 오리 등 가	법 제14조							
금류의 식육 중 포장을 하는 경우만 해	및 제16조							
당한다)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								
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								
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								
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								
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								
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								
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1) 생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 7	성지	영 업	정 지	영 업	정기	د ا
		1개월 5	가 해	2 개	월 과	3 개	월	과

			당 제품 폐	해당	제품	해당	제품
나)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기 영업정지 7	폐기 영 업	정 지	폐기 영 업	정 지
7 = 1,122 20 1 1 20 3 1				15일		1개월	0 1
2) 생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영업허가 •				
경우			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폐기 영 업 정 지	영 업	정 지	영업	정 지
따라 작성・운용하고 있는 자체안전관			1개월	2개월		3개월	
리인증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운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작성・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를 한 경우 4) 1)부터 3)까지 외의 부당한 표시 또는			 시정명령	영 업	정 지	영 업	정 지
광고를 한 경우				10일		20일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증	법	제14조	시정명령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	, 5 5 5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법	제16조	영업정지	영업기	성지	영업전	성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마.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법	제16조	영업정지	영업기		영업전	성지
않은 경우 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	버	ᅰ16ス	15일 영 업 허 가	1개월		2개월	
마. 8 1 1 3 시 시 시 시 시 시 시 8 1 1 2 1 1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Ħ	세10五	6 년 이 / F • 등록 취				
, ,			· 등속 위 소 또는				
			오 도는 영업소 폐				
			의 립오 페 - -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법	제14조	l ''	영업기	성지	영업건	성지
위반한 경우	및	제16조		15일		1개월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제5호나목의 식품운반업·식품판매업[제5호나목

3)의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이미기기숙	근거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 터 제16조까 지				
가)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 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운 반·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수입식품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 은 것을 진열·운반·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페기	2 개 월 과		
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축 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만 해 당한다) 및 제6호를 위반하여 표시 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 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보관방 법과 제3호라목·바목·사목의 표 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표시기 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2) 주표시면에 제품명 및 내용량을 표시 하지 않은 것을 진열·운반·판매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3)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4) 달걀의 껍데기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산란일 또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여한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 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 품 폐기	1 개 월 과 해당 제 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시 정 명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부터 제16 조까지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 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 품(표시된 제 품 만 해당한다) 폐기	취소 또 는 영업 소 폐쇄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식품	·	강기능식

		우 영업	
		정지 2개	
	한다)	월로 한 다)	왜 안 <i>나)</i>
이 코카카드시프시 시네 코스 코카카드	여 여 겨 기		여성건기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		영업정지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5일	1개월	2개월
도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			
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			
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			
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			
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			
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			
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			
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가)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 표시기준			
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한 경우			
(1)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 언 정 지	영업정지	역 언 전 지
		2 개 월 과	
		- ''	
		품 폐기	
(2)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
나)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영업허가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 등 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		
	쇄와 해당		
	제품 폐		
	7]		
다)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을 위조하	영업허가		
I	I	I	I

	거나 변조한 경우	• 등 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		
		쇄와 해당		
		제품 폐		
		7]		
라)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한 경	7일	15일	 1개월
	수			
마)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 광고를 한	7일	15일	 1개월
	경우			
я <u></u> г)	다른 식품・축산물의 유형과 오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혼동하게 하는 표시 •광고를 한	7일	15일	0 H 0 T 1개월
	경우	, E	10 6	I / II ਦ
		~l ~l =l =l	A) A) =) _)	~1 ~1 =1 =1
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	영업정지	영업정지	
	명을 표시・광고한 경우	7일	15일	1개월
아)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7일	15일	1개월
ス ト)	·	여엇저지	여어저지	여어저지
/1/				
		1711 6	2,116	0,115
	장으로 인증받지 않고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경우			
		*1 *1 =1 . 1	د د د ده ده	A3 A3 -2 2
차) 				
		/일	15일	1개월
	○한기/ 夫 세U오러 표시시(청 신下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 3개월 영업정 1개월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카) 그 밖에 가)부터 차)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 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 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 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시정명령		
마.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 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1)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 업 허 가 · 등록 취소 또 는 영업 소 폐쇄
2)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허가 취소 또 는 영업 소 폐쇄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 항은 제외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4조부	,	, -	
1)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수입품을		제16조까			
포함한다)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7110227			
경우로서	7 1				
01-1					
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을 사용한 경우			1 개 월 과	2 개 월 과	3 개 월 과
			해당 제품	해당 제품	해당 제품
			폐기	폐기	폐기
나) 수입식품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은 것을 사용한 경우			1 개 월 과	2 개 월 과	3 개 월 과
			해당 제품	해당 제품	해당 제품
			폐기	폐기	폐기
2)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7일과 해	15일과 해	1 개 월 과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			당 음식물	당 음식물	해당 음식물
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폐기	폐기	폐기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및	제16조			
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7일	15일
2)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					
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					
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					
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					
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					
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					
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					
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가)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 표시기준					
	ı		1	l	1

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한 경우					
(1)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 개 월 과	2 개 월 과	3 개 월 과
			해당 제	해당 제	해당 제
			품 폐기	품 폐기	품 폐기
(2)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
나)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영업허가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 등 록		
			취소 또		
			는 영업		
			소 폐쇄		
			와 해당		
			제품 폐		
			기		
다) 가) 및 나) 외의 부당한 표시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광고를 한 경우				5일	10일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 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 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시정명령		
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	법	제16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마.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허가· 등록 취 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